

2010. 3. 9.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의안발의 서명서 1부.

2.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결의장		결재		부의장	
집주일시	2010. 3. 9 16시 67분	번호	105	(공인)	국장
서리파	제천시의회	의장		담당	유영화

발의자 : 유영화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의 4인

유영화

#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최永和	최영호	
김병종	김병종	
신경장	신경장	
김영선	김영선	
이중현	이중현	

##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419
------	------

발의연월일 : 2010. 3. 9.  
발 의 자 : 유영화의원외 4인

### 1. 제안이유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천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 사회적기업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안 제8조)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창출 작업장의 발굴 육성(안 제9조)
-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비, 경영지원 및 재정 지원, 우선구매 등 지원(안 제10조 ~ 안 제13조)
- 사회적기업 등의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및 홍보(안 제14조, 안 제15조)

### 3. 제 정 안 : 붙 임

### 4. 관계법령 : 붙임

- 첨부 1. 제정안 1부.  
2. 관계법령 1부.

##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일정기간 지원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창출 작업장(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한방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 밖에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
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와 기반 구축
5.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9조(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창출 작업장의 발굴 육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사회적 일자리창출 작업장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작업장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사회

적기업을 발굴 양성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및 시설구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대한 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구성(유·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 등

(4)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지역내 공공서비스 공급 및 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관련법령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09685호, 2009. 5.2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

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7.4.11, 2009.5.21>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